

第244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2月19日(金)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審査된案件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1

(14시29분 개의)

○**위원장 목요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안협의의견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5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우리 정개특위에 구성된 선거법소위, 정치자금법소위, 정당법소위 이 3개 소위가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을 해 오셔서 대충 결론을 맺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에 각 소위가 활동한 결과를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그 보고내용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敬在** 선거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李敬在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선거법소위원회의 중간심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1일, 15일, 16일, 18일, 19일 다섯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을 포함하여 **金容鈞**

위원, **이규택** 위원, **李方鎬** 위원, **이병석** 위원, **朴柱宣** 위원, **全甲吉** 위원, **신기남** 위원, **강봉균** 위원, **金學元** 위원의 참석하에 각 당의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역구의원 정수 243여 명 내외, 인구 상하한선은 10만 명부터 30만 명, 선거구획정 인구산정일 기준은 국회의원 총선거일 1년 전이 되는 날의 직전 월말로 하고, 선거비용보전요건 및 기탁금반환요건의 확대, 예비후보자의 선거준비활동 보장, 미디어 등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의 확대, 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의 폐지,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 개선, 선거비용지출의 투명화 등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합의를 보았고, 국회의원 총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소위원장인 **박종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종희** 박종희 위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대한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중간심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2일과 12월 15일 이틀간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을 포함하여 목요상 위원, **전재희**

위원, 咸承熙 위원, 黃昌柱 위원, 천정배 위원
의 참석하에 각 당의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공한 안 등을 중심으
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치자금기부 시 수
표 등 사용의무화 및 정치자금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예비후보자의 후원금 모금 신설, 법인의 정
치자금 기부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 도입 부
분, 정치자금 모금방법의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및 지급방법 개선,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신설, 정
치자금 지출의 투명화, 후원회 회계보고 제도 등
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보았고, 지구당후원
회 폐지 문제, 정액영수증제, 선거보조금 축소조
정 문제,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세액공제제도 도
입 문제 및 기타 일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요상 위원장, 李敬在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李敬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聖順 정당법소위 위원장께서 나오서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金聖順 金聖順 위원입니다.

정당법에 대한 정당법소위원회 중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6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을 포함하여
심규철 위원, 김택기 위원의 참석하에 범국민정
치개혁협의회의 합의내용과 각 당의 개정안에 대
해 심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입·탈당제 도입,
중앙당 규모 축소를 통한 원내 정당화 유도, 정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절차, 중앙당 내 정책연구
소의 설립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서는 대체로 합의를 보았으나 법정지구당을 폐지
하여 최소한의 지역조직을 자율적으로 두고 정당
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며 시·도당
이하의 지역조직은 정당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지구당의 폐지 내지 지구당의 운영 개선 문제 등
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敬在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3개 소위가
일부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문

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
역구 의원의 정수, 인구 상하한선, 선거구획정 인
구수 산정일 기준시점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
견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지역구 의
원 정수는 243명 내외, 인구 상하한선은 10만 명
이상 30만 명 이하, 인구수 산정일 기준시점은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1년 전 가장 근접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에 통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신기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선 경과보고서에 다수 의견으로 합의를 보았
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열거해 놓은 내용 중에는
전체가 다 합의한 내용도 있고 또 소수의견이 강
력하게 있어서 전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
위원회에서 일종의 표결을 거쳐서 다수의견으로
올라 온 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의원 정수 243명, 상하한선 이런 것은 적
어도 저희 열린우리당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협상이 있어
야 되고 선거법에 관계해서 표결처리로 결정한
예가 없다는 관례를 참작할 때 이것은 정개특위
에서 선불리 결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확정하되 합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회담으로 돌려서 더 협의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 의
원을 243명 내외로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
긴다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전체 법안이 나오
지도 않았는데 선거법 많은 내용 중의 어느 하나
만 여기서 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만 표결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의문입니다.
분명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
니다.

선거법 전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지 의원 정
수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인지? 의원 정수도 전체
정원은 정하지도 않고 지역구 의석만 정해서 보
내도 되는 것인지? 또 상하한선만 정하고 정확한
지역구 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않고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유효한 결정이 되어서 선거구획
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기초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李敬在 간사, 목요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점을 여기서 결정해서 보낸다는 데 저는 반대하고 이런 점은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역구 의원 수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결해서 보낸다는 것인지를 위원장님께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우선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신기남 위원님한테 물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결정에 따라서 금년 안에 선거구제에 관한 결정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만약 금년을 넘겨서 현행법대로 가는 경우 현재에서 결정한 관계법 규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고 치러본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금년 안에 선거구제도와 거기에 따른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정 지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서 지역구를 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만 한다 해서 시간을 끌면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금년 한 해를 넘겨도 괜찮다는 주장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신기남 위원 원만한 합의를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빨리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저희 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부탁도 했습니다. 선거구 문제라든지 의원 정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니 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이 함께 해결해달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적어도 대표 선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정해버리면 그런 시도가 다 무산되는 것이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원 정수와 선거구 문제를 표결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지금 대표들한테 맡기면 순조롭게 합의,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입니까?

○신기남 위원 시도해 보아야지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위원장이 속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한테 넘겨놔야 똑 같은 결론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계속해서 종전 주장을 고집하실 텐데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도달한다 이 말입

니다.

○신기남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결국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표결처리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표결처리가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신기남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여기에 있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입니다.

○신기남 위원 그러면 법안을 가지고 처리해야지 의원 정수만 가지고 표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이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기남 위원 저희는 합의를 할 수가 없고……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容鈞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金容鈞 委員 본 위원도 소위원장의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초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 하한선을 9만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 주로 농촌 선거구 26개가 희생되었습니다. 농촌의 국민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대학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하는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지역대표를 소생시키고 또 보호할 필요성이 국가적으로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도시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인구를 위주로 해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가 농촌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도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보았지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농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대도시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간단히 이 농촌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위원장이 보고하시기를 인구 10만 하한선, 30만 상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10만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많은 인구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30만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에서는 너무나 적은 상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기준 10만~30만을 그대로 각을 지어서 적용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많은 농촌 지역구의 희생과 또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인구를 잃은 지역의 대표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구센서스에 있어서의 착오나 오차 등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볼 때 10만에서 10명이 부족하면 우리가 정한 이 기준에 의해서 바로 통합대상이 되는 것이고 30만에서 10명만 더 나가도 2개 구로 분구대상이 되는 이런 소위 인간의 통치조직으로서의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처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농촌의 하한선을 9만에서 10만으로 올리게 되면 너무 치명적으로 농촌지역구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는 9만 5000 이하의 인구 하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도시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5% 범위 즉 31만 5000 이상의 인구에 달하면 분구하는 것으로 정해서 인구 기준 10만~30만을 유지하되 조정편차를 5%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기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10%의 조정편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0만~30만 인구기준, 좋습니다. 그 인구기준으로 하되 그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구가 금년에 10만에 달했다가 10만에 달하지 않게 된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3개 지역이 인구이동이 심해서 10만이 되었다가 10만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1년 전으로까지 소급해서 인구기준일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총선거일 1년 전이

되는 날의 직전 월말 즉 2003년 3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인구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아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10만이 되었던 구역은 살리고 10만이 안 되었던 구역은 통폐합 대상으로 하자는 다수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이후에 10만에 달한 선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소급입법은 용납할 수 없고 만일 이 인구기준으로 정한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6월 말, 혹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구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구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한나라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해온 지역구 숫자는 245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245~248석으로 지역구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2석을 줄여서 243석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는 것도 너무나 구차스러운 일이다, 적어도 지역구 숫자는 245명 내외로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전체회의에서 되풀이하게 되면 부지하세월로 계속 이 회의가 공허한 메아리로만 그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무 결론을 낼 수 없으니까 3개 소위에 각각 배속되신 분들은 그 소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되도록이면 참아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다음은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方鎬 委員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는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전체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시키거나 표결처리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신기남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미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수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경우에 따라서 소수의견을 붙여달라고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전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열린우리당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붙여 달라’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3당이 합의해서 다수의견으로 모든 안건이 각각 처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토론의 장소라기보다는 일단 1건씩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으면 표결로 처리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다음은 李敬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敬在 委員 신기남 열린우리당 간사께서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대표회의로 넘기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하나의 항목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법, 그 중에서도 한 법의 항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로 처리하기에는 아주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열린우리당에서 낸 안도 상당히 받아들였고 또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다수라고 해서라기보다도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이 어느 정도 동의하면 다수의견으로 올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소수의견으로 올리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수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되기 때문에 대표회의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양당제도하에서 정말 선거의 룰은 소수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합의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다당제하에서 상당수당이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은 여기서 표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문제는 뒤로 돌리시고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또 합의가 안 된 것은 이의 여부를 물어서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서 다수결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다음은 박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희 위원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은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도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말을 넘기고 17대 총선에 대한 법적 인 문제가 제기될 때에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정당법, 선거자금법에 수많은 수백 개의 항목이 있을 텐데 벽두부터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특위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부분에 있어서 후원회를 폐지하는 문제, 후원회를 아주 없앨 것이냐 아니면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이게 되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하나하나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특위가 무슨 의결을 하고 무슨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정치개혁특위도 필요 없고 여야 총무회담에서 모든 것을 합의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기한 안에 국회의원 정수도 정하지 못하고 질질 표류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 전체 회의에서의 표결을 막는 정당에서 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朴柱宣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柱宣 委員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의 선거구에 대한 시한부 합헌결정 때문에 금년 12월 31일 밤 12시가 넘게 되면 대한민국은 선거구 자체가 없는 세계에서 웃지 못할 법치국가가 되어 버립니다. 법치국가가 아니라 무법국가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저희 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은 대선거구 또는 중선거구제였는데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당론을 소선거구제로 완전히 확정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국회의원 자문기구로 출범했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4당이 각당각색을 주장

하게 되면 정치개혁입법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12월 31일 24시 이전까지는 선거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저희들은 소선거구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법을 비롯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내용이 새로운 법 제정에 가까울 정도로 양이 많고 갖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안은 만들지 못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회의에서 각 조문별로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가 열릴 때에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목요상**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생각도 약간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구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위반된 선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27개 전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럴 경우 국회의원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당한 설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될 때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 위험한 문제를 지금 우리 눈앞에 두고 무모하게 그것을 밀어붙이는지 그것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 1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빨리 확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요소들은 오늘 결정해서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확정해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서 그 준비들이 모두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또 공직선거법 이 모든 것이 다 내년 총선의 준비요소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자라고 할 때 90일 전이라고 하면 1월부터 적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종래에 수없이 토론하고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계속 천연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법안을 심의할 때 새로 제정되는 법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낸 법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각 위원들이 어떤 조문을 거론하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정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종래의 방식으로 해야지 제정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씩 축조심의를 하다 보면 소위원회 과정을 다시 한번 또 거치는 결과가 되고 오늘 하루 종일 다 되도록 3개 관계법을 다 통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원칙대로 이의 있는 부분만 얘기해서 수정 가능하면 수정하고 수정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의견이 백출하니까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는 한데, 거듭되는 얘기지만 금년의 시한을 넘기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이 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아까 朴柱宣 위원님이나 金學元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규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정배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법안을 연내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조금의 이론이 없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선거제도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정수라든가 의원 선거방법을 조속히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개특위가 물론 상임위에 해당하는 특별위원회이지는 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실 우리 의원 전체에 있습니다.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이 물론 각 당에서 선임되어 오신 분들이기는 함

니다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반드시 우리 정개 특위가 마련한 안대로 통과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와 또 정파 간에 사실 첨예한 의견충돌이 있는 이런 사정하에서 적어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을 넘겨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특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 운영이나 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간 협의도 하고 또 그것이 매우 존중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각 당에서 다른 의원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가지고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도 그 총무회담에서의 합의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12월 말까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이틀이라도 급하게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 간의 협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금 바빠졌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은 엄밀히 말해서 정개특위에 제출된 의안을 표결하는 것이지…… 물론 각 조문에 대해서 대체로 의견이 어떤가를 물어봐서 다수의견이 이렇다 소수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표결처리해서 다수결에 따라 결정된 바를 우리 정개특위 내지는 국회 원의로 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도 나름대로 충실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각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상과 논의의 기회도, 짧지만 부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전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재희 **위원** 교섭단체 대표 간에 논의해서 합의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정당의 당론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기간 경과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처

리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구 획정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존경하는 신기남 위원님이나 천정배 위원님의 의견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시간에 굉장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론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이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석 **위원** 사실 아주 절박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 결정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12월 11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8일, 12월 19일…… 다른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관계 소위 회의 소집에 비하면 선거법심사소위가 할 수 있는 한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기간입니다.

선거구제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한나라당 소선거구제 안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가지고 있는 당론은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절박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또 현재의 위헌판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헌법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속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헌정 중단의 문제까지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그 당론을 적절하게 변경해서라도 이 소선거구제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서 소선거구제안에 대한 합의도출이나 다수의견을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민련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당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합의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金學元 위원님께서 당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사실상 소선거구제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열린우리당에서, 그것도 마음이 열린 우리당에서 말이지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다수결원칙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고집을 부리고, 또 이것이 시간이 있다면 모르는데 정말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정치개혁 입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전부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선거구 획정 문제, 지역구 의원 정수 확정 문제, 인구 상하한선 문제, 선거구 획정 인구 산정기준 등의 문제에 관한 주요요목에 대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정치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소수의견은 필요하면 적절하게 부의해 줄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입법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있을 수 없는 우스운 역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대승적 관점에서 적절히 합의도출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 대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부분은 합의되었다고 표시되어 있고 다수의견, 소수의견으로 갈린 부분은 다수의견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이미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부분은 여기서 합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다수의견으로 결론이 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절충을 시도해 볼 것인지 그렇게 결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셔야 결국 시간만 허송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목요상** 말씀하세요.

○**신기남 위원**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 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李方鎬 委員** 3당이 합의하면 이것이 4분의 3입니다.

○**신기남 위원** 지금 선거구제나 의원 정수 문제가 다른 것보다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역구 의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내용인데 이것은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가 많다고 해서 이대로 정해서 선

거구획정위로 보낼 것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지금 그것만 처리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신기남 위원** 표결을 누가 안 합니까? 끝에 가서는 해야지요. 그런데 표결을 하더라도 협상절차를 거쳐서 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최종 판단될 때 표결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의원 정수만 여기서 합의를 봐서 그 대목만 떼어 가지고, 더군다나 의원 전체 정수는 정하지도 않고 지역구만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신기남 위원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올라온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부분이 있고 다수의견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합의된 부분은 여기서 합의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수의견으로 올라온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자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는 그 안만 가지고 주장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威承熙 위원님 말씀하세요.

○**威承熙 委員** 지금 법사위고 뭐고 민생법안이 엄청 밀려 있잖아요. 빨리 가서 그것도 의결해야 되는데 정족수가 모자라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항목 한항목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안 된 것은 나중에 표결을 하든가 절충을 해보든가, 같은 말 자꾸 반복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진행하세요.

○**위원장 목요상** 진행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보십시오.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 가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넘겨야지 선거법에다 못 박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입니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자 그런 결론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50인 이내로 구성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선관위가 2분의 1씩 추천하자, 그리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활동하도록 하자고 전원 일치된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전재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말씀하세요.

○전재희 위원 저희들이 선거를 치러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하면 각 당에서 선거감시단을 추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공정성을 잃는다고 각 당이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인원 수를 늘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를 짤 때 각 당에서 추천한 감시인을 선관위에서 추천한 감시인과 함께 조를 짜는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실 것을 범문에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50인 이내로 감시단을 구성하는데 각 당에서 추천한 인원과 또 선관위에서 추천한 인원을 균형있게 조별로 편성해서 활동하자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추가해서 통과시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신설문제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각 30인씩 두기로 하고 수당은 5만 원으로 하며, 후보자 추천은 정당과 선관위가 각 2분의 1씩 하자 이렇게 일치된 합의를 보았는데, 이의 있으니까?

전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재희 위원 자꾸 이의 있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 편성할 때 각 당이 추천한 부정감시원이 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 선관위 추천이 2분의 1 대비

가 안 되면 선관위 추천 몫을 줄여서라도 각 당이 추천한 감시원이 각 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되 각 당에서 추천한 감시단원들이 골고루 편성되도록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전재희 위원 예.

○위원장 목요상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현행대로 20세로 하자 하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신기남 위원 이의가 있는 것은 물론이지요. 저희가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당론인 18세나 최소한 선관위와 범개혁에서 한 19세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제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절충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신기남 위원 위원장님! 가결되었다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 내용이 통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기남 위원 하나하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목요상 이것을 일괄해서 하면 헛갈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용도 모르시고 덮어놓고 찬반 의견 표시를 하면 나중에 이 법안 통과시킬 때 또 문제제기를 하실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기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의제기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목요상 여기서 합의처리된 것은 이의 제기할 수 없지요.

○신기남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천정배 위원** 이것이 국회법상 가결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방망이를 두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위원들 간에 이의 없이 합의되었다고 선언하시면 될 일이지……

○**위원장 목요상** 아니, 방망이 치는 것이 뭐 잘못됐어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변칙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양해를 하십시오. 그런 것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회의진행에 지장을 줍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국회법에 잘못된 관례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목요상** 조용히들 하세요!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사이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방망이는 뭔가 분명한 의결이 이루어질 때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방망이 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그것은 문제제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니까, 양해하십시오.

우선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朴柱宣 委員** 위원장님!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로인데요, 결국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수의견이 20세로 합의된 것이 아니고, 18세 19세를 주장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법 개정을 못 하니까 20세로 간다는 취지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의견은 19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런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한테 재량의 여지를 주셔야 회의를 진행하지요. 자꾸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방망이를 두드리어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각 당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또 소선거구제로 하는 경우에 인구 상하한은 얼마를 기준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의견을 보면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는 상하 30만, 10만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설되는 지역구 수를 계산에 넣어서 우선 지역구 수를 243석 정도로 결정을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얼마로 하느냐는 좀 뒤로 미뤄놓고 나중에 절충의 여지를 남겨두자는 결론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급한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지요.

천정배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요.

○**천정배 위원** 우선 우리가 망국적인 지역할거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대선거구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현재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으로 인구 상하한과 지역구 두 가지를 다 결정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논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역구 의석 수가 몇 개라는 것이 정해지면 전국의 총 인구수를 지역구 의석 수로 나누면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 평균 인구에 50%를 가산하든지 아니면 반으로 줄이든지 해서 인구 편차를 3배수 이내로 맞추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인구 상하한과 지역구 243석 기준” 이렇게 정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구 의석 수만 결정하고…… 물론 그다음에 인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옳지 인구상하한을 우리가 결정해서 넘겨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柱宣 委員** 우리가 무작정 지역구 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얼마인데 대충 인구 20만 명당 지역구를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

자, 일단 기준은 20만 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20만 명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상한이 30만 명이 되고 하한이 1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역구 숫자를 도출했는데 편차가 3대 1이나 되기 때문에 243명으로 선거구 획정이 될 수도 있지만 248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인구 20만 명으로 해서 상하한 30만, 10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243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의견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전체 인구를 얼마로 보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셈 아닙니까? 20만 명에 10만 명씩 덧붙이거나 빼거나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가 4800만 명이라고 하면 20만 명으로 나누면 240명의 지역구 의원 정수가 나오겠지요? 그런 고려는 소위원회 과정에서 했습니까?

○**金容鈞 委員** 조정하다 보면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위원장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48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얼추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기남 위원** 아까 천정배 위원이 한 방식이 맞지요. 전체 의석 수만 정하고 나머지는 확정위로 넘겨야 상하한선을 정해서…… 지금 지역구가 몇 석인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李敬在 委員** 지금 천정배 위원께서도 “지역구 의원 수가 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전체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것은 표결하십시다.

○**신기남 위원** 저는 의원 정수나 선거구제를 가지고 표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해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목요상**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고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이 중요사안인데 여기에서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돌아오는 22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겠고 22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나면 나는 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李方鎬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하세요.

○**李方鎬 委員** 지금 서로의 주장이 늘 해왔던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에 하나 위원장님께서 22일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제조건이 4당 간사회 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그 전에 4당 간사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의견을 절충해 보시고 추후 논의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2일로 연기한다고 해도 4당 간사끼리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위원님들, 제가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워낙 중요한 사안인데 절충의 여지도 남겨 놓지 아니한 채로 당장 오늘 표결처리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기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하세요.

○**신기남 위원** 항목 하나하나의 표결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합의냐, 아니냐 체크해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조항 한 조항 표결해 갑니까? 전체 법안을 놓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표결해야지요. 지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표결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위원장 목요상** 저도 법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해야 조문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기남 위원** 확인해 가세요. 그런데 왜 표결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의견의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李方鎬 委員** 일반 법률과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목요상** 여러분들 모두 의정활동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문제제기만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는 문제의 제기를 위한 제기이지 합당한 의견제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절충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하든지 각 당 대표들한테 요청을 하든지 해서 소위

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협조를 해 주든지 도움을 좀 주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李敬在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하세요.

○李敬在 委員 여기에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는데 대표 절충이니 어쩌니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원장께서 정치개혁특위의 위상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당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또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목이 쉬도록 많은 토론을 거쳤고 우리가 소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신기남 위원 등 열린우리당에서 많은 논란을 벌이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와서 앉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시는 정도로, 이것은 거의 다수로 가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다만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그동안 주장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한 번 연기해도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만은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의사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해야만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하세요.

○李方鎬 委員 조금 전에 우리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위를 심의할 때 분명히 신기남 간사께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다가 안 되면 좋다,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달라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 표결을 잘 하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수의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4당이 있는데 한 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끌려다닐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분명히 소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달라 달라,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4당 간사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2일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권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4당 총무들에게

다시 협의를 구하겠다는데 각 당은 이미 당론이다 결정되어서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4당 대표에게 아니면 총무에게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것은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자기 직무를 포기하는 발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표결을 안 하시려면 22일로 연기하는 것도 표결해 주시고 또 표결이 되면 22일에 하시고 표결이 부결되면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것은 뒤로 미뤄서 회의 맨 끝에 처리하겠습니다.

○李方鎬 委員 이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순서대로 해야지요.

○위원장 목요상 소위에서 전원 합의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李方鎬 委員 순서대로 처리해 주세요.

○위원장 목요상 순서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李方鎬 委員 지금까지 순서대로 해왔는데 왜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왜 순서대로 하다 이 법안을 뒤로 미루십니까? 된다, 안 된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목요상 지금 4당 간사님들 합의가 우선 다른 것부터 처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최종 결론을 내자고 의견일치를 보았으니깐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소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의원 정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인구 상하한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맨 뒤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신기남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목요상 위원들이 가시면 어떻게 하지요?

○신기남 위원 이렇게 밀어 붙이려면 정개혁특위는 뭐 하러 열었습니까? 그냥 해서 한나라당 의견대로 통과시켜버리지요.

○李方鎬 委員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신기남 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수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여기에서 결판을 내자고 하면 한나라당 당론으로 통과시켜버리면 되지 뭐 하러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 목요상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위원 그동안에 정개혁특위가 제대로 가

동하지 않았던 전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질질 끌려온 것이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원내 1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추어지는 것이고 또 열린우리당에서는 범국민정개협의 합의사항, 건의사항에 어떤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 하자는 식으로 했던 것이고 결국 우리 국회가 책임을 지고 이런 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총무회담에다 넘기면 거기에서 합의가 됩니까?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시고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고 월요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원만하지 못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천정배 위원 그동안 사실 우리 정개특위가 매우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한나라당에서 당론의 결정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탓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끈질긴 소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나서의 첫 전체 회의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한 번 더 생각도 해보고 협상하는 데 시간을 3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22일을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위원장 목요상 지금 4당 간사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선 문제가 없는 것부터 처리하고 맨 나중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천정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소선거구 문제도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비례대표제 전국 단위로 하는 것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데……

○천정배 위원 대체로 전체 의견을 확인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목요상 나중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의된 것으로 처리했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규택 위원 천정배 위원님, 이것이 규정이 아니고 다 법 조항입니다. 이것을 표결처리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

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목요상 서로 좀 이성을 발휘합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넘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신기남 위원 어차피 한 번 소위에서 다 해 본 것인데 그 중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을 더 얘기하게 하고 더 얘기할 부분이……

○위원장 목요상 그런데 소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전체위원들이 소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위원들이 각 3개 소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에서 올라온 그 안의 합의내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다른 위원님이 문제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의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나가서 이의가 없으면 전체로 의사일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통과됐다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소위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면 어떡해요?

○천정배 위원 지도부에 넘겨서 협의를 더 하자니까……

○신기남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이 정도도 협의를 안 하시려고 했습니까? 전체회의에서 해야지요. 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 서베이를 해야지요.

아니 전체회의에서 이 정도도 토의를 안 하십니까? 더 해야지요. 더 하고……

○이병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위에 참여하신 위원은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신기남 위원 저는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론을 한다는데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십니까?

○李方鎬 委員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잖아요!

○이병석 위원 결국 오늘 회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열린우리당에서 결국 회의진행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니까 이것으로 회의를 끝냅시다.

○신기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구제, 의원정수, 선거연령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토론도 없이, 협상도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李方鎬 委員** 소위에서 할 말 다 했으면 됐지, 소위에서 다 했잖아요!

○**신기남 위원** 소위에서의 협상이었지 결국 본 무대는 전체회의 아닙니까?

○**李方鎬 委員** 왜 했던 말 또 하고 있어요?

○**신기남 위원** 의사진행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없습니다. 표결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李方鎬 委員** 지금까지 모든 의사일정이 그렇잖아요.

○**李敬在 委員** 신기남 위원께서 20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다수결로 왔으면 혹시 그쪽에서 나온 분 중에서 다른 분이 문제제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신기남 위원** 다 서베이를 해서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법안을 내세요. 내서 찬성 반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법안 내서 표결할 때까지는 적어도 원내대표 선에서 한번 협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병석 위원** 원내대표의 의견을 담아서 당론으로 들어온 것 아니요?

○**신기남 위원** 소수의견으로 나온 것은 저희는 전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나라당 측에서도 법안을 보고…… 지금은 아니에요.

○**위원장 목요상** 열린우리당의 자세도 좀 고쳐요. 자기 주장만 고집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신기남 위원** 전체회의는 오늘 처음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왜 전체회의 처음이야? 소위원회 몇 번 했고 그동안에 전체회의를 지금 몇 번…… 오늘이 17번째 전체회의 합니다.

○**신기남 위원** 여기가 본 무대이지요.

○**위원장 목요상** 글썬, 그것은 아는데 결국은 시간만 끌지 결론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이병석 위원** 그러면 소위에서 의견을 개진한 신 위원님 외에 다른 분이 의견을 개진하세요.

그리고 정개특위에 들어와 있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있는 데서 -정개특위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자꾸 대표회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신기남 위원** 대표회의의 중요한 사안……

○**이병석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의 얘기지요!

○**李方鎬 委員** 자꾸 대표 얘기를 하고 있어?

○**신기남 위원** 이 문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李方鎬 委員** 여기는 정개특위니까 정개특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신기남 위원** 국민에게 주는 영향도 많고 모두 주시하고 있는데……

○**李方鎬 委員**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쪽 주장이고 또 다른 당에서도 주장이 있으니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신기남 위원** 신중하게 국민여론을……

○**李方鎬 委員** 열린우리당 안 가지고 국민투표 한번 붙여 봐요. 국민여론은 90% 반대예요.

○**신기남 위원** 형식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규택 위원** 그러면 299명으로 올려요?

○**신기남 위원** 법안도 없는데 어떻게……

○**이규택 위원** 299명으로 올리면 돼요?

○**신기남 위원** 그것은 표결하는데 오늘 그것을……

○**李敬在 委員** 최종적인 법안은 확정위원회에서 책임질 법안이 아니고 거기서 확정해 가지고 여기 와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이렇게 하십시오.

우선 한 20분 정도만 정회를…… 법사위원회가 지금 법안 의결처리한다는데 15분 지나면 법사위원회가 끝난다고 하니까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요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이의 없이 처리될 수 있는 것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이의가 없으면 없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법 그대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신기남 위원** 유인물에 다수의견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저희가 반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립니다.

그다음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거일을 토요일로 하자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 등록 시 최근 3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세실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수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저희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립니다.

기탁금의 반환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15% 이상은 50% 보전해 주고 15% 이상 득표했을 때는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되었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활동을 허용하자는 의견인데 이것도 다수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90일 전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연락소의 옥상이나 외벽면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합의 보셨지요.

또 선거사무장 등 3인 이내 선거 사무관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것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90일 전부터 명함을 돌릴 수 있는데 이 명함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용과 선거용이 다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적혀 있는 일반용 명함은 90일 전부터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사진과 경력이 기재된 선거용 명함은 현행법대로 일정한 시일부터 규제하도록 합의를 보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발송과 인터넷 광고 이런 것은 두지 말자는 이야기이고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도 없애자 하는데 다수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반대이지요?

○신기남 위원 열린우리당은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소수의견으로 올립니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을 5배수로 두자는 데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인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신문광고는 정당만 20회 허용하고 라디오나 TV 광고도 정당만 각 15회로 허용하고 또 선거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하면 이 비용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이런 것을 전부 폐지하자는 데 합의 보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배우자 및 연설원의 확성장치를 활용한 연설은 현행 규정에 국회의원 선거 시 사회자 말고 연설원을 1인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연설원은 후보자가 연설하는 장소와 별도의 장소에서도 연설할 수 있도록 합의 보신 것이지요?

○천정배 위원 반대입니다. 연설원이 차량에서 연설하는 동안에 후보자는 차량 아닌 곳에서 연설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목요상 후보자가 연설하는데 연설원은 다른 데 가서 별도로 연설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연설원을 1명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설원이 확성장치를 가지고 연설을 하는 동안에 후보자는 그 인근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운동을 한다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런 내용을 합의보신 것입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공영방송에서 주관하는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인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반대입니까?

○신기남 위원 저희는 저희 당 의견대로 주장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올립니다.

○심규철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열린우리당은 어떤 주장이지요?

○**신기남 위원** 저희는 비례대표 및 국회의원에 게 있어서도 공영 TV에서 대담·토론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측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것이 우리당이예요. 대통령 선거도 물론이고 비례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심규철 위원** 현행유지는 됩니까?

○**위원장 목요상** 첫 번째가 현행이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선관위, 범개혁 그렇게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철 위원** 맨 앞이 현행인가요?

○**위원장 목요상** 예.

○**小委員長 李敬在** 이 부분은 미디어운동을 하자는 기본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지역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특히 중앙에서 공영방송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지역구 토론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구별로 하는 것은 어렵고 각 지역의 소단위에 있는 지역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정책토론의 기회가 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깐 그것으로 대체하자 그런 뜻입니다.

○**金學元 委員** 이미 합의한 것을 다시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 수도권처럼 방송국은 적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많아 가지고 사실상 공영방송이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대통령하고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배로 늘려도 되지 않나 싶어요.

○**小委員長 李敬在** 예, 그것 상관없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행에 있는 것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3회 이상,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1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만이라도 배로 늘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이상이니깐 1회 이상이건 3회 이상이건 상관없어요.

○**위원장 목요상**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지요?

○**신기남 위원**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그러면 소수의견을 달아 올리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연설원을 추가하기로 한 부분, 그것은 당초 현행법으로는 연설차량이 정지한 상

태에서 확장장치를 이용한 연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돌아다니면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천정배 위원** 현실적으로 차량이동 중에 로고송도 틀고 다니고 경우에 따라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도 않을 법을 억지로 규제해서 세우라고 그러면 어차피 한 5m 가다가 한 번 세워서 한 번 틀고 또 5m 가서 세우고 이런 식으로 교통만 방해하면서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어차피 두 대 이상이 아니고 차 한 대이니깐 한 대 가지고 이동 중에도 그냥 로고송을 틀든지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기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나요? 아까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이규택 위원** 그것이 물론 서울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데는 장날이라 이거예요. 장날인데 그 조그만 지역에 후보가 만일 일곱, 여덟 명이 와 가지고 차 일곱 대, 여덟 대 와 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뱅뱅거리고 연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과거 현행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위원님, 그런 걱정이 계신다면 장날에 여러 대가 한 장소에 모여서……

○**이규택 위원** 그것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천정배 위원** 그것은 상호간에 일단 먼저 간 사람한테 몇 미터 이상 떨어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는 어떤 선거든지 이것을 지키는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규택 위원** 저는 3선을 하면서 여태 지켜 왔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천 위원님, 이것은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네요. 양해하시지요? 그대로 넘어가시지요.

○**심규철 위원** 이 문안의 뜻은 연설원은 후보자와 관계없이 혼자 있을 때 주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렇지요.

○**심규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후보자가 없어도 연설원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小委員長 李敬在** 맞아요.

○**심규철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연설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小委員長 李敬在** 아니, 연설하는 것은 상관없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그 옆에 안 있으면 계속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후보자는 다른 곳에서도 인사하고 다닐 수 있다 그 조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규제여부를 후보자 중심으로 주어를 쓰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자동차 근처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떨어져도 괜찮으냐 하는 개념이지 연설원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 하는 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朴요상**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공영방송 주관으로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이것은 대통령선거에서는 3회 이상,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또 보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의 현행법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 이의를 다는 것입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우리당에서의 얘기와 차이점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차이점 아니에요?

○**신기남 위원**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저도 사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도권, 경기·서울지역의 방송국은 제한되어 있는데 선거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점을 내세우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런 방송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고 그러면 어떤가 싶습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별 토론회는 방송사 주관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역별로 지역케이블 TV라든가, 가령 인천의 경우는 인천

방송이 한다든가 아마 자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똑같이 모든 지역별로 국회의원 후보자들끼리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다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는 공영방송이 딱 2개밖에 없는데 100여 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물리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朴요상** 예, 이해되셨으면 우리 신기남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넘어갑시다.

○**심규철 위원** 신기남 위원한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들어 보시지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朴요상** 아니, 국회의원도 이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니까……

○**신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KBS, MBC가 다 공영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5분씩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선거기간에 심야시간으로 특별한 시간에 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저는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그것은 전국 단위는 한다 이겁니다.

○**신기남 위원** 여기 안 들어 있잖아요, 현행유지인데요?

자민련 의견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라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다수가 현행대로 하자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냥 “소수의견으로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간 것입니다.

○**위원장 朴요상**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으로 정치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신설 규정을 두자고 합의보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부분에 관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활동은 원칙적으로 상시 허용을 하자, 이것도 합의를 보셨네요?

○**신기남 위원**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리고 사이버부정감시단에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자 그리고 전자서명제에 의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자, 이런 것 다 합의를 보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체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두자’ 그런 얘기입니까?

○**신기남 위원** 예, 범개협 안대로 하자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다른 당에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한 시점부터 공표 못 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랬는데 이것을 좀 당겨서 선거일 전 7일부터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신기남 위원** 예.

○**위원장 목요상**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립니다.

또 의정활동보고도 다수의견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금지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신기남 위원** 저희는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그것을 소수의견으로……

○**위원장 목요상** 90일 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자는 얘기입니까?

○**신기남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의정보고서 일체 하지 말자는 얘기네요?

○**신기남 위원** 범개협 안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범개협 안대로 하자? 그러면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립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규정에 관해서 항목별 산정방식에서 총액산정으로 계산을 하자, 이것은 합의된 것이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선거비용의 보전 등도 항목별 보전방식에서 총액기준으로 전환해 가지고 보전을 하자, 이것도 다 합의하신 것이지요? 투표비율이나 이런 것도 합의하신 것이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도 후보자·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통해서 선거비용

수입·지출 이런 것을 다 보고를 하고 또 1회 3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은 수표·신용카드만으로 사용을 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하자, 이런 것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기남 위원** 예, 합의되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거비용의 보전문제를 총액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셨는데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방식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체로 선거비용이 이렇게 한다면 한 지역구당 1억 원, 그것보다 좀 많겠습니다마는 1억 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 중에서 15% 이상을 받으면 전액보전이라는 것이 도 대체 얼마 정도를 보전하고 간다는 뜻인지, 그 내용에 관해서 혹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목요상** 선거법 규정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보전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없고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것이 지금 선거공영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그 후보자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아시면……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비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억 2000만 원정도 됩니다. 지금 항목별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항목별로 보전금액이 얼마쯤…… 한 삼사천만 원 아닙니까?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런데 보통 전체 선거비용의 한 70% 정도가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한 7000만 원정도 된다고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거의 7000만 원, 8000만 원정도 되고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쇄비가 선관위에서 공고할 때……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총액개념으로 바꾼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대체로 본다면 1억 2000만 원정도가 총 선거비용인데 그 중에 8000만 원쯤은 결국 15% 이상 득표하면 국고에서 보전되는 것이고 나머지 순수 자기부담은 4000만 원정도다 그겁니까?

-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렇습니다.
- 천정배 위원** 그것이 지금 현행 제도이고 대체로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소위합의인가요?
-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그렇습니다.
-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넘어갑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 총 70회에 걸쳐 가지고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 보셨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에 관해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데 합의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확대당직자회의를 폐지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지요?

○**小委員長 李敬在** 그런데 이 부분은 정당법에서 지구당 폐지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지구당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확대당직자회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상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보궐선거인 경우에만 2시간 연장을 하자고 합의를 보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도 자격을 상실토록,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후 1년 이내에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자는데 합의를 보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신기남 위원** 이것은 합의가 아니지요. 저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목요상** 합의로 되어 있는데요.

○**신기남 위원** 아니, 그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잘 아실 텐데, 우리는 줄곧 반대해 왔는데요.

○**위원장 목요상** 좋습니다.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리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다수의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당적이탈을 해도 국회의원직은 그냥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까?

○**신기남 위원** 좌우간 저희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좋습니다.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리겠습니다.

○**심규철 위원** 현행유지를 원하시는 건가요?

○**신기남 위원** 그렇지요, 현행유지가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국외부재자 투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다수의견이지요?

○**신기남 위원** 저희는 도입하자라는 것이 소수의견이고요.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미도입이 다수의견이고 도입하자라는 것이 소수……

○**신기남 위원** 저희 열린우리당은 도입하자라는 얘기이고요.

○**위원장 목요상**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신기남 위원** 대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당선무효 된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보전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자라는 것은 합의 보셨지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국외부재자 투표 그 부분은 우리 자민련도 도입을 하자라는 측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도입하지 말자는 의견이시지요?

이 당선무효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보전된 기탁금과 선거비용 다시 환수하자라는 것은 합의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당선무효소송으로 형이 확정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재·보궐 선거에는 다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 보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선거일 후 금품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행위시부터 6개월로 연장하는 것도 합의 보신 것이지요?

○**金容鈞 委員** 이것 공소시효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목요상** 합의를 본 것이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선거법에 관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시효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金容鈞 委員**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공소시효 부분입니까?

○**金容鈞 委員**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단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자들이 6개월간 꼼짝을 못 합니다. 누가 어떤 배신행위를 하고 누가 무슨 투서를 해서 어떤 선거소송이 걸릴지 몰라 가지고 전체 당선자들이 약 6개월간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또 선거일 이후에 식사 한 번 한 일 있다, 그것을 누가 고발했다 그러면 이 공소시효가 또 2개월 연장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일단 선거는 투표하고 당선 통지한 그 시점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거에 관한 문제는 6개월로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야지, 특히 식사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당선되고 나서 식사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응제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걸렸을 때 이것 4년 계속해서 6개월 공소시효에 걸려 가지고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너무 무한정입니까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小委員長 李敬在** 李敬在 위원입니다.

행위 시로부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은, 그 원칙은 찬성을 하되 이 행위 시가 언제까지냐,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무한대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거 끝난 뒤에 일정한 시간을 두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2개월까지의 행위 시는, 그것도 말하자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법이 선거 끝나고 금품관련이라는 것이 대가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6개월 동안 아닙니까?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선거 전 180일부터이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도 같은 기간에 대가제공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은 선거 끝나고 6개월 만에 공소시효가 무조건 만료되게 되기 때문에 그 6개월이 똑같은 6개월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 6개월 되는 시점에 어떤 금품을 제공하면 그 다음날이나 그날 중으로 그냥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런 난점을,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갈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6개월 만에 어떤 대가제공, 금품제공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6개월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선거 끝나고 1년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金容鈞 委員** 7개월째에 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천정배 위원** 7개월째에 주는 것은 선거 끝나고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그런데 기부행위 6개월은 선거에서 득표하기 위해서 미리 했기 때문에 6개월을 두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 6개월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가 끝난 후에 별도의 범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범법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점부터 6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되는 것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한 6개월이 되기 직전에 범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내일이 6개월 되는 날인데 오늘 돈을 주고 범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그 다음날 딱 지나 가지고 이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거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 시부터 공소시효를 주도록 해서 처벌을 해

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범법행위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小委員長 李敬在**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 시로부터 공소시효를 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찬성하는데 행위 시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1년 후에 행위한 것, 3년 후에 행위한 것도 거기서 공소시효 한다고 그러면 4년 내내 돌아갈 수도 있다, 행위가 6개월 내에 금지된다 하는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에 선거 끝난 뒤의 행위를 2개월로 할 것이냐, 3개월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하는 그 기한을 명시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것은 각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小委員長 李敬在** 없어요.

○**이규택 위원** 공소시효만 있지, 없어요.

○**천정배 위원** 없기는 없는데, 어쨌든 범죄행위가 있었으면 공소시효가 범죄행위보다 먼저 끝나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완료되니까 그 전에 하던 것인지, 6개월 넘어서 하던 것인지 간에 최소한의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은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합의안의 취지 아닙니까?

○**小委員長 李敬在** 그러니까 그 원칙은 저희들이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1개월 내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7월에 끝나서 개개인들이 밥도 먹을 수 있고, 통상적인 활동을 해도 그것을 다 법으로, 이것을 행위로 쳐서 그 뒤로부터 6개월 또 가고 있고 또 6개월 후에 밥 먹어도 마찬가지, 1년 후에 밥 먹어도 행위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해서 선거소송기간으로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선된 대가인가 하는 사실 인정의 문제일 텐데요, 이를 테면 아무리 3년 후라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1억 원을 줬다고 하면 그 사람은 6개월 정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되겠지요.

○**小委員長 李敬在** 아니요, 지금 선거 전에는 당원들하고 밥도 못 먹고 일체 밥을 못 먹는데 그 뒤 평상시 자연적인 활동도 밥 먹는 것으로 결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4년 내내 선거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규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요상** 예.

○**이규택 위원** 이것도 다음으로 넘기세요.

○**金容鈞 委員** 미합의로 처리하세요.

○**위원장 목요상** 이렇게 하시지요. 서로 이론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미합의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사범에 대한 권석재판, 두 번에 걸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냥 권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기에 보니까 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벌금형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권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족이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입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형사소송법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남 위원** 소수의견이 있으니까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시고요.

○**위원장 목요상** 선거비용 제한에 의한 제재강화, 범개협 안을 보니까 200분의 1만 초과 지출한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도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아예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기남 위원** 이것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현행유지가 다수인데요, 저희는 그대로 범개협 안을 주장을 해서 소수의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소수의견을 달아 올립니다.

○**신기남 위원** 그 이후의 몇 개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다음에 선관위 조사권 강화 부분도 현행대로 가자는 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강화하자는 얘기지요?

○**신기남 위원** 강화하자는 것이 저희 소수의견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과태료 부과확대 부분에서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하한은 10만 원으로 하고, 이 경우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한금액을 5000원의 50배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또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를 포함해서 후보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야유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즉 결혼식 등 경조사에서 경조금품을 받는 등 상시제한 위반행위, 또 선거와 관련하여 산행, 관광, 출판기념회

등 각종 집회 등에서 음식물 접대 또는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이런 것을 일체 못 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이규택 위원 예.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체 못 하게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합의 보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金容鈞 委員 그런데 “경조금품을 받는 등 상시제한 위반행위”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현재 허용되는 경조금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朴柱宣 委員 위법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그러니까 주는 것도 안 되지만 받는 사람도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니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으면 받는 사람도 처벌조항에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양벌 규정 확대에 대해 다수의견은 그러지 말고 현행대로 그냥 가자는 것 아닙니까? 소수의견은 더 확대하자는 얘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달아 올립니다.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보호 규정에 관해서는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신설할 것 없고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소수의견은 신설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대로 달아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기남 위원 저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는 규정을 두자는 것 아니에요?

○신기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 조항인데 이것을 왜 다수의견은…… 하여튼 저희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다음에 축·부의금품 이런 것들을 상시도 그냥 다 없애자는 것이 소수의견이고, 그러지 말고 현행대로 가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지요?

○小委員長 李敬在 축·부의금 금지도 현행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1만 5000원 이하의 축·부의금은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규택 위원 1만 5000원 이하의 조화 갖다 주는 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가자는 것은 그대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규택 위원 예, 다수의견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대로 넘어갑니다.

또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小委員長 李敬在 위원장님, 지금 축·부의금은 현금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에 평상시에도……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현행유지라는 거예요.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이규택 위원 결혼식 때 시계하고 조화를 주자 이거예요.

○小委員長 李敬在 나는 그것 반대인데요.

○金容鈞 委員 그러면 소수의견 달아요.

○위원장 목요상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금지 규정도 현행대로 가자가 다수의견이고 이것을 지구당의 경우는 일상적인 경우에도 금지하자는 것이네요, 일체 금지하자는 그런 얘기군요.

○신기남 위원 예,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심규철 위원 시골이 지역구인 사람은 후원회 하는 경우에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스타고 오는 사람들 일일이 돈을 건어서 버스를 타고 오면 괜찮은데 일괄로 계산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킬 법을 만들어 봐야지 그것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후원회의 경우 버스비 지불도 보통은 들어온 후원금에서 지불합니다. 결국 후원회 참석하는 사람 돈으로 지불하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후원회를 둘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처리를 하도록 하지요. 보류를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그것이 정당법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 목요상 예, 맞물려 있으니까요.

○金學元 委員 수석전문위원, 지금 각 케이스별로 음식물 제공 및 교통편의 금지되는 부분하고 금지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을

우리가 스터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후원회뿐만 아니라 지구당 활동으로 인한 음식물 제공, 교통편의 제공 이런 리스트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뽑아 주세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위원님들, 빠르면 내일 아니면 월요일까지는 그 자료 일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출판기념회 금지기간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 이후부터 제한하자는 데 합의하신 것이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당원집회 금지기간을 확대하자 이런 소수의견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그냥 현행법대로 가자 그런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허위사실공표죄 이것은 그냥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보셨지요?

○**小委員長 李敬在** 예,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맨 뒤에 있는 29쪽을 보십시오.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또 그 공표한 내용이나 이런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이런 것은 현행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이하의……

○**金學元 委員**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부분은 그동안에는 공표한 자하고 소지한 자를 같이 처벌했는데, 공표한 자와 소지한 자를 따로 떼어서 소지한 자는 조금 경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내용이고, 그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7년 이상 징역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던 규정인데 이 규정을 하한 500만 원 이상을 풀어서 상한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이것 합의하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다음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과 선거범죄조사권에 관해서 다수의견은 선관위의 금융자료제출요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한하기로 하고,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한 제134조제2항 위반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또 선거범죄조사권 중 자료제출요구권을 삭제하고, 증거물품수거권도 삭제하고, 동행요구권도 삭제하고, 위반 시의 벌칙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자료제출요구권이나 선거범죄의 조사권을 남용했을 때의 처벌규정을 두기로 하고, 또 정치자금법 제25조(자료요구 등)에 관해서도 앞으로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또 요구한다는 것은 낡은 센스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까 없애자 이런 합의를 보셨네요. 다수의견이 그렇습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소수의견은?

○**신기남 위원** 이것은 선관위 조사권한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것이어서 저희는 일관되게 반대하고요.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현행법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신기남 위원** 선관위 안이나 범개협 안을 받아서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당에서 이대로 그냥 합의하는 바람에 다수의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달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金容鈞 委員** 출석요구권 존치 이것도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는……

○**신기남 위원**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이, 저는 이 조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선관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자꾸 다수의견이 가는 데에 대해서 저희는 소위에서도 강력히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해 둡니다.

왜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막고 철저히 해야 할 시점에 어떻게 해서 더 약화시켜서……

특히 제134조를 대폭 약화시키는 것은 현재보다도 더 개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朴柱宣 위원! 말씀하세요.

○朴柱宣 **委員** 소수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 선거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제한 금융계좌추적권을 선관위에 준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본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마치 수사기관화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권익침해가 되기 때문에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순이고요.

그다음 헌법상 자기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를 제시요 구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이 법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법 논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친·인척이라든지 관계업체라든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소수의견으로 그렇게 달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맨 뒤에 있는 30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하고 핵심인데, 우선 네 번째 항목인 국회의원선거기간 단축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현행법상 17일로 되어 있는 것을 12일로 줄이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채자투표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편발송하고 그것이 또 되돌아오고 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14일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일이 되면 우편이 돌아오기 전에 합법적인 선거운동기간이 끝나 버리니까 부채자투표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14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일로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선거기간이 단축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예, 줄이는 것이지요.

○신기남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는 추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규택 **위원** 예비선거 90일이 있잖아요.

○신기남 **위원** 예비선거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정식……

예비선거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예비운동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위원장 **목요상** 이것은 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지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각 정당에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자, 완전 도입하자 그런 방향이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운동기간이 길면 길수록 선거운동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보전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것이 다 국민의 부담인데 그러니까 선거운동기간을 줄이자, 이것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비용이 줄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서 정견이나 사람됨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이 얼마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동안 대통령선거는 23일이든가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한 십육칠일 대략 국회의원선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비용도 줄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인이라든가 새롭게 나온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비후보자는 아까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하여간 점검하고 넘어갔는데 선거일 90일 전부터 사무실도 낼 수 있고 일반명함도 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알릴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 인지도를 높이는 정도의 활동이고, 본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자기 경력이나 자기 사람됨이나 정견을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유세차량이나 공보를 보낸다든가 벽보를 붙인다든가 하는 것들이 주요한 선거운동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수단으로 충분히 유권자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는 역시 현행 정도의 기간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목요상** 박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희** **위원** 선거기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무슨 공청회 한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인터넷 매체라든가 방송매체가 빈약했을 때는 선거기간 한 달을 들어서 골몰골몰 누비면서 다 선전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은 인터넷 매체, 미디어 매체를 접해서 정보를 접할 기간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춰서 국민 세금으로 치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 신인들에게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더 늘리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2주일 정도면 자신을 알리고 하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경험칙상 보면 선거 초기에는 유권자들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 막판에 가서 찬찬히 뜯어보고 정보도 보고 하는데 지금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합동연설회하는 기간하고 또 정당연설회도 폐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후보들이 지역구를 살살이 누빌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제공이다, 아니다 하는 측면보다도 선거를 가급적 효율적으로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14일이다, 17일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14일로 3일간 줄이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남**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여기서 그렇게 검증도 안 받아보고 우리 현역 의원들끼리 이것 시끄러운데 그냥 그만하자고 이렇게 결정할 문제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신기남** **위원** 좀더 신중하게 무슨 자료라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선거기간이 짧고 그런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은 오히려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현재

있는 것을 줄인다는 것이 나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목요상**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方鎬** **委員** 우리나라가 선거기간이 짧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일본도 처음에 21일에서 17일로 했다가 지금은 12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선거를 보면 ‘3개월 전에 운동 허용’ 이런 것이 우리같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 그리고 지금도 이미 명함 돌리고 다 돌아다닙니다. 하루 이틀이 없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실무자 선에서 우편물 왔다갔다하고 부재자투표 이 문제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면 2일 정도 더 늘리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하나 3당 내지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진행되어야지 급방하는 식으로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것 어디 가서 더 조사하고 알아보자는 식으로 또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14일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정해서 14일 정도는 양해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좋습니다.

그러면 14일을 다수의견으로, 이것을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달아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선거구제, 이것이 다수의견은 도입을 반대하고 현행대로 가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셨는지……

말씀하세요.

○**이규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것인데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10만, 30만 할 경우에, 지역구가 한 16석이 늘 경우에 토탈 273명으로 할 때 전국구가 30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여성의 의회 진출을 막는 것 같은 의미와 또 우리는 현행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273명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조금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이번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24개가 분구가 된답니다. 24개가 분구될 때 거기에 양성평등제도를 도입해서

여성 따로 뽑고 남성 따로 뽑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로 세분하는 꼴이지요. 그래서 여성들의 정계 진출 문을 열어놓자,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양성평등선거구제를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金學元 委員** 저는 여성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위헌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 그러나 하면 물론 지금 분구되는 구역을 반으로 딱 잘라서 한쪽은 남자만 나오고 한 쪽은 여자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구되는 지역을 통틀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남자의 경우나 여자의 경우나 아무리 성의 관계, 도시와 농촌 관계, 사회적인 위치의 관계, 직업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모두 하더라도 1 대 3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인간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분구된다고 그래서 그 지역만 양성평등으로 하면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생겨 가지고 그것도 평등하지 않을 뿐더러 분구하는 지역에 있어서 남자만 하나가 나오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가 3 대 1이 아니라 6 대 1에 가까운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위헌적인 요소가 생깁니다.

물론 여성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강구하고 이런 위헌적인 요소를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택 위원** 그런데 또 어떤 법률가에 의하면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의 의회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채택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창합니다.

○**천정배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헌 여지는 없는 제도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소속한 우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내린 것 같지 않아서 당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으로는 이 방안이 매우 훌륭한 방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이것은 하나 여기에 보장해야 되겠군요.

분구할 때 현재 한 선거구를 2개로 늘리는 데는 그것을 남녀 1명씩 뽑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의 노원구 같으면 노원갑·을 2개 선거구인데 그것을 3개로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우에도 3명 뽑을 때 1명은 여성으로만 뽑자고 하는 것이 지금 양성평등선거구제의 취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데 그때 어떻게 할지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해서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들이 여성을 30% 이상 지역구 공천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기존 있는 지역구에서 그것을 관철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분구되는 경우에는 아직 그에 관한 기득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 찬성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李敬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小委員長 李敬在** 예, 천정배 위원께서 아주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양성평등구제를 주장하는 배경은 조금 전에 이규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 당론으로도 늘릴 수는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가 줄면 그만큼 여성의 진출이 제한을 받게 되니까 여성의 국회의원 진출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양성평등구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 바로 양성평등구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법률적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는 저도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가령 1구에서 3인의 교육위원을 뽑을 때에 학부모회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일반인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많이 당선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자들이 교육위원에 선출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여튼 한 사람은 반드시 교육위원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3명 중

에서 4등을 하더라도 교육자는 우선 하나 넣는 식으로 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위헌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워싱턴 쪽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위헌의 소지는 별로 없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천정배 위원께서 걱정하셨듯이 분구되는 지역이 가령 갑·을로 되어 있는 것이 셋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수원 의 경우는 3개 지구를 분구 4개 지구로 하는 경우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건 제외하고 단순히 1구가 2구로 양분될 때는 1 대 1로 해서 남녀를 한 사람씩 선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金聖順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聖順** **위원** 기본적으로 분구되는 선거구하고 분구되지 않는 선거구하고 성격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구된다고 해서 왜 분구되는 구는 여성과 관련을 짓고 그렇지 않은 구는 관련 안 짓고,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이규택** **위원** 기득권 때문에……

○**金學元** **위원** 이건 평등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왜 지금 분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서 여성에게 특혜를 주고 왜 다른 데는 특혜를 안 주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朴柱宣** **위원** 여성의 정치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교육지책으로 한나라당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당에서는 사실은 지역구의 10%를 여성만 뽑는 전용선거구를 만들자 하는 당론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론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만을 위한 후보를 제한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만 여성후보의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 제가 더 이상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못 했습니다. 이 양성평등선거구제도도 여성전용선거구제도와 같이 위헌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를 전부 특정한 성으로만 제한을 시켜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그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특정 지역 유권자에게만

준다는 것도 그것도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진짜 어긋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을 논의를 하려면 사실 여성전용선거구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양성선거구제도를 같이 놓고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표결로 처리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學元** **위원** 제가 여성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적극 찬동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중대선거구가 돼 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전국적으로 다 한 두세 명 이상씩 죽 뽑는 그런 거라면 전국 일률적으로 그 중에서 10%면 10%, 20%면 20%, 50%면 50%를 여성들이 무조건 당선되도록 한다고 하면 그건 차별성이 없지요. 전국이 똑같이 다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구되는 지역만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지역은 여성에 대해서 기회가 봉쇄되면 이건 분명히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구라는 것도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군이면 군, 구면 구에서 반으로 쪼개는 걸 예상하는 모양인데, 가령 군과 군 두 개가 붙어서 그동안에 했다가 이게 인구가 많아 가지고 따로 떼어서 선거구가 됐다고 할 때 그것도 지금 해당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혜택이 되고 이쪽 부분은 여성이 혜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비율로 볼 적에도 1 대 3의 범위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측으로 놓고 볼 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하려면 중대선거구를 치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을 좀 해량을 하셔서 여기서 그런 위헌적인 문제로 입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목요상** 예, 어차피 양성평등선거구제도 이 여부도 선거구제를 어떻게 우리가 채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논란이 됐던 선거구획정에 관한 그런 안건을 좀 다루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말씀들 좀 해 주시지요.

○**小委員長 李敬在** 양성평등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수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수 정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확정위원회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우선 여기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지요.

○**위원장 목요상** 오늘 결론을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小委員長 李敬在** 결론 내지요.

○**신기남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좀 주시지요.

○**위원장 목요상** 지금 신기남 위원께서 선거구제에 관한 한은 상당히 중요사안이니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월요일쯤으로 좀 미뤄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李方鎬 委員** 지금 처리하지요.

○**위원장 목요상** 표결처리하자 이 말입니까?

○**李方鎬 委員** 예.

○**신기남 위원** 지금 정치관계법은 이게 표결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다 합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선거구제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위원장 목요상**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22일 월요일 오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라서 월요일 오후 2시에 회의예정을 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신기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요상** 예.

○**신기남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전체회의 첫날입니다. 전체회의에서 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소위에서 얘기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모든 결론은 전체회의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첫날 이 중요한 문제를 다 결정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시간은 있어요, 며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제야 됐느냐 하는 것은 정개특위가 더 앞당겨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의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회의를 많이 못해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날에 이것을 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4당 간사님들 의견조율

을 잠깐 해 주시지요.

○**천정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말씀하세요. 말씀은 말씀대로 하시고 간사님들이 의논해 주세요.

○**천정배 위원** 22일 오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지요?

저희가 그냥 시간을 천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위의 시한도 12월 31일이고 이 문제가 이미 4월에 이루어져야 할 게 늦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의사를 지연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22일 오전에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상 더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22일 오전에 가부간에 결정되고 그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면 오후에 심의를 시작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말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열린우리당 측에서도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을 더 모아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시간만 천연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장께서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22일 오전 10시에 다시 특위를 열어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가부간에 결말을 내는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4당 간사님이 잠깐 조율해 주시지요.

4당 간사님들이 월요일에 정개특위를 다시 소집해서 그 안에 합의 처리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일 안 되면 표결처리를 응한다는 조건부로 시간 여유를 달라 이렇게 해서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鈞 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항의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에서 표결처리를 항목을 나누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구 상하한선 문제를 1번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2번이 되고 또 현재 지역구 의석수와 인구수 확정으로 인해서 선거구 획정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의 여유가 전혀 없이 10만 30만으로 바로 자른다는 강경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을 8년마다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불과 10표 20표 차이로 선거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년으

로 할 것이냐, 4년으로 할 것이냐도 따로 표결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형 농촌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요.

인구기준일에 대해서도 따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5조제1항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金容鈞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러한 사안을 항목별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여러분들이 합의를 도출해 주시면 이상적이고, 정 합의가 계속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항목으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일치시켜 주시지요.

그러니까 표결 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신기남 위원 그날 결정하기로 하고 저희는 중대선거구제인데 현실적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것도 그날 다 같이 말씀드릴 때……

○신기남 위원 농촌에서는 소선거구 같이 1명으로 하고 대도시, 중급 이상의 도시에서는 3인 내지 5인으로 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법소위 위원장이신 李敬在 위원님께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사이에 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심층 있게 다시 한번 절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22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또 합의가 안 된 것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충 점검해서 넘어간 부분도 전부 조문화해 가지고 그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기남 위원께서 도농복합선거구를 심각하게 연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결론부터 얘기하

면 동감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인 경우에는 지역대표성이 아무래도 적고 시골인 경우에는 지역대표성이 많기 때문에 도농복합하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또 하나는 인구기준 문제 가지고 도농복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농촌의 저인구인 것이 다 구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 45개 선거구인데 인구 평균으로 하면 24~2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촌인구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선거관계법소위에서 심층 있게 논의하셔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랜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出席委員(16人)

金聖順	金容鈞	金學元	목요상
박종희	朴柱宣	신기남	심규철
李敬在	이규택	李方鎬	이병석
全甲吉	전재희	천정배	威承熙

○出張委員(1人)

정의화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
입법심의관	李秉吉

【報告事項】

○請願回附

국회의원선거구획정방식개선에관한청원

(2003년12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럭키아파트 108-1201 정진섭으로부터 이성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18일자 회부됨